

구분	신청일자		신청방법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2025.03.31.(월)	09:00 ~ 17: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앱(청약 Home)

■ 특별공급 청약자격 안내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(①~⑥)을 모두 갖춘 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만19세 미만인 자녀(태아나 입양아 포함)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②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 모집공고 <표2>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<표4>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(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)의 120% (단,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%) 이하인 분

• 당첨자 선정 순서 : 우선공급(90%) - ①지역 - ②배점기준표 - ③미성년 자녀수 -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- ⑤추첨
추첨공급(10%) - ①지역 - ②추첨

• ①소득구분

단계	소득구분	내용
1단계	우선공급(90%)	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인 분 (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 이하)
2단계	추첨공급(10%)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%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

①지역 : 해당지역 거주자(부산광역시 거주자) -> 기타지역 거주자(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)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 기준		비고
		기준	점수	
계	100			
미성년 자녀수 (1)	40	4명 이상	40	자녀(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
		3명	35	
		2명	25	
영유아 자녀수 (2)	15	3명 이상	15	영유아(태아를 포함한다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
		2명	10	
		1명	5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
		한부모 가족	5	
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
		5년 이상 10년 미만	15	
		1년 이상 5년 미만	10	
해당 시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공급신청자가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*주민등록표등본 미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·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
		5년 이상~10년 미만	10	
		1년 이상~5년 미만	5	
입주자 저축가입기간 (6)	5	10년 이상	5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의 경우 :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/ 재혼의 경우 :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. 단,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.)

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

(3), (4) :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

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

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

* 동점자 처리 기준 :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

소득기준	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								
	공급유형	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다자녀 가구	우선공급 (90%)	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8,646,374	10,293,706	10,837,258	11,679,703	12,522,149	13,364,594
	추첨공급 (10%)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30% 이하	9,366,906	11,151,514	11,740,362	12,653,012	13,565,661	14,478,311
	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200% 이하	14,410,624	17,156,176	18,062,096	19,466,172	20,870,248	22,274,324

유의사항	자녀기준	
	단계	내용
유의사항	출산	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(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,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 (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)
	입양	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양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아동수당·부모급여 수령내역 등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시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,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
	임신	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)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 (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)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	재혼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-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.

*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지 과정보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
* 청약자격 미속시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